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33호로 2025년 11월 7일 차인영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디지털 미디어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소통 매체가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구민에게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 함양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 명: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제2조)
- 다. 구청장의 책무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 라. 지원사업 및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5조~제9조)
- 마.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5.11.7.~11.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통하여 올바른 정보 분석 및 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	제명	내용
제1조	목적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
제2조	정의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의무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매년 실행계획 수립·시행 -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에 포함 가능
제5조	지원사업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지원 가능
제6조	위원회 설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가능
제7조	위원회의 구성	10명 이내의 위원 구성 - 위원장: 소관 부서의 국장 - 부위원장: 호선 - 임기 2년, 한차례 연임
제8조	위원회의 위촉 해제 등	-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가능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착 기여 공로 인정 시 포상 가능
제11조	포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12조	시행규칙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실행계획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포상,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

○ 검토 결과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cy)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판별하고 분석하여 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뜻하며,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정보의 흥수 속에서 허위 정보, 가짜뉴스, 온라인 혐오 표현 등 디지털 환경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정보의 진위 판단 역량이 부족하여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고령층 또한 디지털 소외로 인하여 공공서비스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배경 하에 2020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¹⁾하였고, 2024년에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1) 2020.08.2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종합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발표2)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곳은 3곳으로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마련하는 추세임.

번호	자치단체	법규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3.11.0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4.07.18.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4.11.07.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3)에 근거하여 구민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보편적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라고 할 수 있으며, 현행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침 하에 우리 구(區)에 맞는 실행 기반 및 교육 지원 체계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 조례 안은 제정이 타당하다고 여겨짐.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

- 방통위·문체부 등 5개 부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발표
- 시청자미디어센터·미디어교육원·학교미디어교육센터 등 광역 거점시설 마련
- 배려하고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성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의 연대·협력 강화

- ✓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전국 확대,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
- ✓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SNS,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업로드·공유 교육 강화 및 방송 제작시설·장비 무상 대여 확대
- ✓ 늘어나는 허위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팩트체크 교육 강화 및 알고리즘 이해교육 실시
- ✓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디지털 시민성 강화

- 2) 2024.3.28. 문체부, 방통부 부처 합동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발표
- 3)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참 고 자 료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